

고 시(안)

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업무(설치장소)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8. 29.

경 북 지 방 우 정 청 장

o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내역

총괄국	우편취급국	수탁자	설치장소		변경(이전)일 (업무개시일)	비고
			현재(~에서)	변경(~으로)		
대구달서	대구와룡	유**	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29-5	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91길 47-64, 501호	'16.9.10. ('16.9.12.)	